

#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71
----------	------

2018. 2. 27  
도시계획관리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# 1. 제안경위

- 2017. 11. 14 전철수 의원 발의 (2017. 11. 15 회부)

## 2. 제안이유

- 현행 「주택법」 개정 사항 및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시행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.

## 3. 주요골자

- 가. 현행 「주택법」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수정사항을 반영함(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)
- 나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정·시행에 따른 일부 조문을 삭제·이동함(안 제9조의2)

## 4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「주택법」의 전부개정 사항과 「공동주택관리법」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철수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
- 기존의 「주택법」이 주택의 건설·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전부 개정(‘16.8.12 시행)되고, 주택법 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「공동주택관리법」으로 분리·제정(‘16.8.12 시행)되었음.
- 이 개정조례안은 위 법 체계에 따라 현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“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”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「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」에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, 나머지 개정사항은 주택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로 특이사항 없음.

주택 조례 <삭제>	공동주택 관리 조례 <신설>
<p>제9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) ① ~ ③ (생략)</p>	<p>제5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) ① 시장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</li> <li>2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</li> </ol> <p>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,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%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</p>

※ 참고: 주택관련법 체계 개편현황

